관 세 청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제출시기 준수 안내

1. 수출입물류과-910(2012.3.29)호와 관련입니다.

2. 해상·항공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('12.4.1)에 따른 제출시기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('12.6.30까지)됨에 따라, '12.7.1부터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전면 적용할 예정입니다.

3. 이와 관련, 선사·항공사는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제출시기를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라며, 세관·중계사업자 및 관련협회에서는 물류당사자 사전안내 등을 통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전면시행 안내 1부. 끝.

관 세 청 장

수신자 본청각과(청차장제외), 전국세관(직속기관 제외), 한국관세물류협회, 한국국제물류협회, 한국관무역개발원,관세사회,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외항사협의회,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, 선주협회, 특송협의회,KCNET,KTNET, KLNET,

관세행정관	행정사무관	수출입물류과장 전결 2012. 6. 22.

협조자

시행 수출입물류과-1888 접수

우 302-701 대전 서구 둔산2동 정부대전청사 수출입물류과 / http://www.customs.go.kr
전화번호 042-481-7823 팩스번호 042-481-7829 / ywjpine@hanmail.net / 대국민 공개

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전면 시행 안내

1. 제출시기

구 분	제출 시기
해상화물	○ (원칙)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 ○ (근거리지역) 선박에 적재하기 전,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○ (벌크 · 환적화물 · 공컨테이너)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○ (선상수출신고물품) 선박이 출항한 후 익일 24시까지
항공화물	○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,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

○ 근거리지역의 범위는 중국 · 대만 · 홍콩 · 일본 · 러시아(극동지역)에 한함

- 다만, 해상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근거리지역에는 필리핀 · 베트남 · 캄보디아 · 태국 · 인도네시아 · 말레이지아 · 싱가포르를 포함

○ 수출화주(제조자 포함)가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적용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통보일까지 제출시기 적용 유예

○ 해상 수입화물 및 해상 환적화물(입출항 포함)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

2. 처벌규정

○ 제출시기를 위반한 경우 법제276조(허위신고죄)제3항에 따라 벌금부과(선사, 항공사)

○ 적하목록 제출이후 B/L누락건을 추가하는 경우 법제277조(과태료)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(선사, 항공사, 포워더)

3. 행정사항

○ 해상수출적하목록 작성서식 변경('12.6.30)

- 현행 '양륙항*' 항목에 '최종목적항**' 추가(선사, 중계사업자)

* 양륙항(선박기준) : 국내에서 출항한 **선박**이 물품을 양륙할 해외의 항구명 및 국가

** 최종목적항(화물기준) : 국내에서 선박에 적재된 **화물**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해외의 항구명 및 국가(제3국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만 기재)

○ 해상 수출적하목록 전송차수 변경(별도 지침 시달)

- 현행 3차전송(최종마감)에서 4차전송(최종마감) 개선

- 화물이 혼재되어 4차 전송이 필요한 경우 벌크화물은 시스템 개선전까지 환적화물과 동일하게 출항 후 익일까지 제출(선사)

○ 적하목록 사전제출시기 적용안내(선사, 항공사)

- 적하목록 취합·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포워더, 수출화주에게 개별 House B/L 제출시기 명확히 공지

○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기준 등록 및 조치

- 해상·항공화물별 적하목록 제출시기 기준등록*(정보관리과)

* 관세행정정보시스템>>수출입화물>>정보관리>>적하목록적기제출관리

- 제출시기 위반여부 확인하여 조치(일선세관)